

# 日本の 住民投票條例

朴英道\*

## 차례

### I. 概要

### II. 住民投票制度의 類型

1. 憲法에 의한 것
2. 法律(地方自治法)에 의한 것
3. 條例에 의한 것
4. 事實上에 의한 것

### III. 住民投票制度의 評價

### IV. 住民投票條例 事例

1. 原子力發電所建設과 有關한 住民投票條例
2. 開發과 環境을 둘러싼 住民投票條例
3. 自治團體 合併의 찬부에 有關한 住民投票條例
4. 기타 住民投票條例

\* 韓國法制研究院 行政法制研究室長, 法學博士

## I. 概要

日本國憲法이 규정하는 직접민주제로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國民投票制度(제96조), 최고재판소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제95조),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제도(제95조)를 채용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것은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제도이나 이 제도에 따른 住民投票은 1949년부터 1951년에 걸쳐 18회의 사례에 불과하고 그것도 전부 지방공공단체나 그 주민에 대해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地方公共團體의 權限을 축소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義務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주민투표로 보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표민주제에 유래하는 現行制度가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없다는 상황가운데 주민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住民投票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채용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기여하고 그것이 國民主權의 原理에 지지되어 헌법상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며, “住民投票은 중요사항에 관해 주민의 직접적 판단을 묻는다는 점에서 民主主義의 이념에 상응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원자력 발전소건설, 공항, 쓰레기처리장, 미군기지건설이라는 지역사회의 중요사항이 議會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또한 首長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자주 제기되어 주민사이에 間接民主主義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II. 住民投票制度의 類型

### 1. 憲法에 의한 것

日本國憲法 제95조는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게만 적용되는 特別法(이것을 지방자치특별법이라 한다)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住民投票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地方自治法 제261조 및 제262조는 지방자치특별법의 住民投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법률차원에서 표결을 위한 住民

投票制度가 설정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지방자치특별법은 국회가 의결한 후 당해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그 成立要件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방자치특별법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일반적·원칙적 체도를 정하는 기존의 法律制度에 대해 새로운 특별적·예외적 체도를 두는 법률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住民投票가 행해져 제정된 특별법으로서는 1949년부터 1951년에 걸쳐 18개의 사례가 있으며, 현재에는 이 체도에 의해 特別法이 제정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制度에 의해 실제로 제정된 법률에 관해서도 어느것도 住民에게 어떠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주민투표에 회부하여 贊否를 묻는 것에 어느 만큼의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 2. 法律(地方自治法)에 의한 것

현행 일본의 地方自治法은 조례의 제정·개폐의 청구(74조)를 필두로 하여 몇개의 직접청구체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 의회의 해산청구(제76조), 의원의 해직청구(제80조) 및 장의 해직청구(제81조)에 관해서만 최종적인 판단을 選舉人의 투표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해산 또는 해직에는 우선 有權者의 1/3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나아가 투표에 있어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解職 또는 解散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3종류의 소환외에 地方自治法은 주민투표체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령 법정수(유권자 1/50)를 상회하는 署名과 더불어 조례의 제정·개폐의 직접청구가 행해지더라도 그 최종적인 판단은 住民投票가 아닌 의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또한 현재는 폐지되어 있으나 이전에 법률로 규정되었던 住民投票制度로서 중요 재산·영조물의 독점적이익부여 및 독점적 사용의 허가(지방자치법 제213조), 전쟁중의 強制合併市町村의 분리(동법부칙 2조) 및 自治體警察의 폐지(경찰법 40조의3)에 관한 것이 있었다.

## 3. 條例에 의한 것

현재 법률로 규정된 주민투표제도는 위에서 본 特別法의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법상의 해산 또는 해직청구 뿐이다. 따라서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특정의 쟁점에 관한 表決을 주민투표로 행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이외의 근거를 요구하며

節次등을 규정하여야 된다. 이러한 근거규범으로서 우선 고려되는 것이 條例이며,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條例가 실제로 다수 제정되고 있다. 또한 地方自治法 제74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주민이 直接請求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조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住民投票條例를 지지하는 논자도 住民投票의 결과를 지방공공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로 보아 長과 議會를 구속하는 힘은 없다고 한다. 다만 間接民主主義를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이른바 여론조사식으로서의 住民投票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條例로 “住民投票의 결과는 長(또는 議會)을 구속한다”라고 하면 違法이나 “長(또는 議會)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법해석상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학계·실무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 4. 事實上에 의한 것

일본에서는 최근 주민투표를 행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률·조례의 근거없이 이른바 事實上の 住民投票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오히려 많다. 이들 주민투표는 대체적으로 합병문제, 町名名稱 변경문제, 원자력발전소건설문제, 도로건설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이 행해지고 있다.

### Ⅲ. 住民投票制度의 評價

현재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1996년 8월 4일에 실시된 “新鴻縣卷町の 原子力發電所設置에 관한 주민투표”, 1997년 12월 21일에 실시된 “名護市の 美軍飛行場返還에 따른 海上헬리포트建設을 둘러싼 市民投票” 등을 계기로 주민투표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투표의 실시에 대해 우선 에너지정책이나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國策事業과 관련한 것을 한 지방의 주민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견해도 많다. 또한 주민투표는 일본의 政治制度의 기본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대해 대의제를 채용하고 있는 다수 국가에서 住民投票나 國民投票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직접민주제는 間接民主制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오늘날의 일

본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代議制를 보완하는 기능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한편 일반론적으로도 주민투표제도를 地方自治活性化의 계기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투표의 효용을 의문시하고 특히 조례등으로 法定外의 투표제도를 두는데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대중동원에 의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할 위험성, 주민이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문제의 존재, 판단에 있어서의 충분한 情報의 부존재와 토론과정의 결여, 주민이 판단가능한 질문의 부존재 등을 지적하면서 주민투표제도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결국 주민투표제도에도 한계나 폐단,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의회에 의한 의사결정이 특정의 논점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에 항상 民意를 적절하게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의 利益集團의 압력을 받기 쉽다는 등 대표민주제의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住民投票制度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한 위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합치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적합한 제도로서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IV. 住民投票條例 事例

현재 일본의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조례는 크게 최근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原子力施設の 設置에 관한 주민투표조례”, “開發과 環境을 둘러싼 주민투표조례”, “合併의 찬부에 관한 주민투표조례” 및 “기타 주민투표조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분야별로 대표적인 주민투표조례를 몇가지 소개한다.<sup>1)</sup>

##### 1. 原子力發電所建設과 관련한 住民投票條例

원자력발전소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1998년 현재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5종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또는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통되는 것은 原子力施設の 건설·가동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 내진설계의 신뢰성, 안전검사의 모호성 등의 불안으로부터, 施設の

1) 여기에서 소개하는 주민투표조례는 東京都에서 내부자료로 발간한 “住民投票條例集”에서 주요한 것을 발췌하여 소개한 것이다. 소중한 자료를 보내준 東京都職員研修所 및 자료를 입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行政自治部 自治企劃課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

건설에 있어서는 계획의 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행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의 直接請求가 행해지거나 의회에서 단체장,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안되기도 한다.

○ 卷町の 原子力發電所建設에 관한 住民投票條例

(新潟縣 卷町 1995.7.19 制定, 1995.10.4 改正)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卷町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이하 “卷原發”이라 한다)의 건설에 대해 町民의 찬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町行政의 민주적이며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투표) ①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卷原發의 건설에 대한 찬부는 町民에 의한 투표(이하 “주민투표”라 한다)로 행한다.

②주민투표는 町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투표의 실시와 그 조치) ①주민투표는 町長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町長은 卷原發 예정부지내 町有地의 매각 기타 卷原發의 건설에 관계된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유효투표의 찬부에 대한 과반수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투표의 집행) 주민투표는 町長이 집행한다.

제5조 (주민투표일) 주민투표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일요일로 하며, 町長은 투표일 1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투표자격자) 주민투표에 있어서 투표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투표일현재 卷町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전조에 규정한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에 卷町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공고일전일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 (투표자격자명부) 町長은 투표자격자에 대해 卷原發建設에 관한 주민투표자격자명부(이하 “자격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 (비밀투표) 주민투표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9조 (1인1표)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제10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①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직접 주민투표를 행하는 장소에 출두하여 자격자명부 또는 그 초본의 대조를 거쳐 투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소에 직접 출두할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11조 (투표방식) ①투표자격자는 卷原發의 건설에 찬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卷原發의 건설에 반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직접 ○의 기호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체의 고장등의 사유로 직접 투표용지에 ○의 기호를 기재할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12조 (투표의 효력결정) 투표의 효력결정은 다음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표한 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당해투표를 유효로 한다.

제13조 (무효투표) 주민투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전부 기재한 경우
3.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의 어느 곳에 기재한 것인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14조 (결과의 공고등) 町長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공고하고, 정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투표운동)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자유이다. 다만, 매수등 町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구속되거나 부당하게 간섭받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투표 및 개표) 투표시간, 투표장소, 투표입회인, 개표시간, 개표장소, 개표입회인 기타 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위임) 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紀勢町の 原子力發電所設置에 관한 町民投票條例

(三重縣 紀勢町 1996.12.25 公布)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紀勢町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町民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며, 나아가 町行政의 원만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町民投票) ①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에 대한 찬부에 관한 町民에 의한 투표(이하 “町民投票”라 한다)를 행한다.

②町民投票는 町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町民投票의 실시와 조치) ①町民投票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전기사업자로부터 町民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와 관련된 건설동의의 신청이 있을 때에 실시한다.

②町民投票는 전항의 신청 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행한다.

제4조 (町民投票의 집행) 町民投票는 町長이 집행한다.

제5조 (町民投票의 기일) 町民投票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町長이 정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투표자격자) 町民投票에 있어서 투표의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투표일에 정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전조에 규정하는 고시일(이하 “고시일”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고시일의 전일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을 가지는 자로 한다.

제7조 (투표자격자명부) 町長은 투표자격자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설치에 관한 町民投票자격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 (비밀투표) 町民投票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9조 (1인1표)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제10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①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스스로 町民投票를 행할 장소(이하 “투표소”라 한다)에서 명부 또는 그 초본의 대조를 거쳐 투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투표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투표할 수 있다.

제11조 (투표의 방식) ①투표자격자는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때에는 각각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에 ○의 기호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고장 또는 문맹으로 인하여 스스로 투표용지에 ○의 기호를 기재할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투표할 수 있다.

제12조 (투표효력의 결정) 투표의 효력결정에 있어서는 다음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표한 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투표를 유효로 본다.

제13조 (무효투표) 町民投票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의 기호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3. ○의 기호외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
4.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동시에 기재한 것
5.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의 어느 곳에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제14조 (町民投票의 결과고시 등) ①町長은 町民投票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함과 아울러 정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町長은 제3조의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회답하는데 있어서 町民投票에서 유효투표의 찬부중 과반수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15조 (투표운동) 町民投票에 관한 운동은 町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구속되거나 부당



하게 간섭 또는 町民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투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을 경과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南島町에 있어서 原子力發電所建設에 수반한  
事前環境調査에 관한 町民投票에 관한 條例  
(三重縣 南島町 1996.3.24 公布)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南島町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건설에 수반한 사전환경조사(이하 “사전환경조사”라 한다)에 관하여 南島町長과 중부전력주식회사의 합의가 성립한 데 수반하여 지방자치의 본지에 의거하여 사전환경조사에 대하여 町民이 자유로이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공명하고 적성에 행하여질 것을 확보하고, 정행정의 공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기여하며, 南島町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町民投票) ①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수반한 사전환경조사에 대한 찬부에 관한 町民에 의한 투표(이하 “町民投票”라 한다)를 행한다.

②町民投票은 町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町民投票의 실시와 조치) ①町民投票은 南島町과 중부전력주식회사간에 체결한 1995년 12월 10일의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에 의거하여 중부전력주식회사가 南島町에 대해 사전환경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인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南島町長의 동의 내지 부동의의 의사결정은 본조례에 의한 町民投票의 결과를 존중하여 행한다.

②町長은 중부전력주식회사로부터의 사전환경조사의 신청에 대해서는 町民投票의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없는 때에는 町民의 의사는 부동의로 보며, 이 주민의지를 존중하여 정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町民投票의 집행) 이 조례에서 町民投票에 관한 사무 및 집행에 대하여는 町長이 행한다.

제5조 (町民投票의 기일) 町民投票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중부전력주식회사가 南島町長에게 사전환경조사의 신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회답을 하기전에 이 신청이 있을 때로부터 1월이내에 집행하며 투표일의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투표자격자) 町民投票에서 투표의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투표일에 南島町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전조에 규정하는 고시일에 南島町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고시일 전일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7조 (투표자격자명부) 町長은 투표자격자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건설에 수반한 사전 환경조사에 관한 町民投票자격자명부(이하 “자격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 (투표의 비밀보지) 투표인은 투표한 사항에 관하여 누구에게 대해서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제9조 (1인1표)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제10조 (투표방식) 투표자격자는 원자력발전소건설에 수반한 사전환경조사에 찬성하는 때 또는 반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에 직접 ○의 기호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①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스스로 町民投票를 행할 장소(이하 “투표소”라 한다)에 가서 자격자명부 또는 초본의 대조를 거쳐 투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제12조 (투표의 효력결정) 투표의 효력결정에 있어서는 다음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표한 자의 의사가 명백하다면 그 투표를 유효로 본다.

제13조 (무효투표) 町民投票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의 기호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3. ○의 기호외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
4.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동시에 기재한 것
5.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중 어느 곳에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

제14조 (투표 및 개표입회인) 지정된 투표소 및 개표소의 입회인에 관하여는 町長이 임명한다.

제15조 (町民投票의 결과고시 등) ①町長은 町民投票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정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町長은 전항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설명회의 개최) 町民投票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등은 정홍보로 행한다.

제17조 (투표운동) 町民投票에 관한 운동은 町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구속되거나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町民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2. 開發과 環境을 둘러싼 住民投票條例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住民投票條例는 美軍用주택건설, 해안·호수의 매립 관계, 골프장건설계획외에 국제문화공원도시건설, 道路의 건설방법, 공항건설 등과 관련한 조례이다. 어느것도 개발계획에 대해 자연보호나 생활환경의 보전의 관점에서 반대의 입장이며, 計劃의 시비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그 투표결과를 단체장이 존중함을 목적으로 직접청구되고 있다.

### ○ 逗子市 住民投票付託에 관한 條例案

(新奈川縣 逗子市 1984.4.24 原案否決)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상의 중요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다수의 이익에 합치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직접적 이해관계자로서의 시민의 의지를 투표로서 결집하고, 나아가 시정의 원만한 운영과 공중의 복리실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투표의 요건) ①이 조례에서 시정상의 중요문제란 市内에서 적용 또는 실시되는 것으로서 市 및 市民이 직접 이해관계자이어야 한다.

②주민투표의 발의는 逗子市の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자(이하 유권자라 한다)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주민투표부탁청구 또는 시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의결 또는 市長의 전결을 요한다.

제3조 (付託請求) ①유권자는 그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그 대표자가 市長에 대해 주민투표부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市長은 전항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③청구할 수 없는 기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항에 준한다.

제4조 (주민투표부탁청구의 절차) ①주민투표부탁청구를 하려는 유권자(이하 “청구대표자”라 한다)는 市長에게 별도로 정한 주민투표부탁청구 개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주민투표부탁청구개시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주민투표관리인을 정하며, 주민투표관리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청구대표자는 신고일로부터 11일 이후 40일간 소정의 서식으로 주민투표부탁에 찬동하는 유권자의 연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청구대표자는 서명기간중 유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임자를 선임하고, 주민투표관리회에 신고한 후 서명활동을 위임할 수 있다.

⑤청구대표자는 서명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서명부를 주민투표관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민투표관리회는 청구대표자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하고 제출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효서명총수증명서를 청구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투표의 집행) 주민투표는 市長이 집행한다.

제6조 (주민투표의 고시) ①市長은 청구대표자가 유권자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유효총수증명서를 첨부한 주민투표부탁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청구요지, 투표일, 투표방법을 포함한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시의회가 주민투표부탁의 발의를 한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③市長의 전결로 주민투표발의를 한 경우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제7조 (투표일) ①투표일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로 한다.

②투표일 이전의 고시기간중의 투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선거위원회) ①주민투표의 관리는 주민투표관리회가 한다.

②투표사무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사무에 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주민투표관리회의 설치 및 폐지는 市長이 한다.

제9조 (투표방식) ①주민투표는 비밀투표로 한다.

②투표권은 1인1표로 한다.

③투표는 선택하려는 란에 ○표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조 (공보 및 열람) ①주민투표관리회는 주민투표의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유권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청구대표자의 주민투표부탁청구의 내용전문, 투표일, 투표방법을 명시한 공보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고시기간중 주민투표청구서의 전문 및 청구안건에 관련된 행정상의 자료를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상의 자료란 시의회, 위원회의 관련 의사록, 관계기관의 심의록 및 사업등 당해안건과 관련한 신고·신청서, 계획안등을 포함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에 관한 정보, 법령, 규칙등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및 공개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의 이익이 손상되거나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市長은 이유를 제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행정사무의 일시정지) ①주민투표의 고시기간중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결과의 확정까지 당해안건과 관련한 행정사무는 원칙으로 전부 정지한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가 성립하고 의회가 소집되는 경우 의회의 표결이 행해지기까지 당해안건과 관련한 행정사무는 원칙으로 전부 정지한다.

제12조 (서명 및 투표에 대한 부정행위) ①누구든지 주민투표부탁청구의 서명 및 주민투표에 있어서 유권자 및 운동원에 대해 폭행, 위력의 행사, 유인 및 교통, 집회, 연설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 및 투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유권자 및 운동원을 유도하거나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주민투표의 성립) ①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로 성립한다.

②주민투표의 결과는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지구이상의 지구에 유효투표의 3분의 2이상이 전체의 주민투표의 결과와 상반하는 경우 주민투표의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④전항의 지구란 逗子, 栢山, 沼間, 池子, 山の根, 久木, 小坪, 新宿의 8개지구로 한다.

제14조 (주민투표의 확정) ①주민투표관리회는 개표후 5일 이내에 유효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주민투표관리회로부터 투표결과의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의회의 소집) 주민투표가 성립한 경우 市長은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市長의 보고와 천명) ①市長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 의회에서 주민투표청구내용의 전문과 투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동의회에서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는 취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7조 (의회의 표결) ①市長은 소집한 의회에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부동의를 요구하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②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동의, 부동의를 결정한다.

제18조 (주민투표의 결과의 고지) ①의회에서 주민투표의 결과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市長은 그 직명으로 주민투표청구의 전문에 市長이 의회에서 천명한 천명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은 취지의 부속문서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관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동문서를 시의 공보등으로 시민에게 고지한다.

제19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米子市 中海淡水化賛否에 대한 市民投票에 관한 條例

(鳥取縣 米子市 1988.7.15 公布)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米子市(이하 “시”라 한다)에 있어서 中海淡水化(한정적 담수 화시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찬부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며, 나아가 시행정의 원만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市民投票)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中海淡水化에 대한 찬부에 관한 시민에 의한 투표(이하 “市民投票”라 한다)를 행한다.

제3조 (市民投票의 실시와 조치) ①市民投票은 시가 中海淡水化의 찬부의 결단을 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市長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결단에 즈음하여 市民投票에서 유효투표의 찬부중 과반수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4조 (市民投票의 집행) 市民投票은 市長이 집행한다.

제5조 (市民投票의 기일) 市民投票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市長이 정하여 투표일의 10일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투표자격자) ①市民投票에 있어서 투표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투표일에 시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米子市長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외에 투표자격자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7조 (투표자격자명부) 市長은 투표자격자에 대하여 中海淡水化의 찬부에 관한 市民投票자격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 (비밀투표) 市民投票은 비밀투표로 한다.

제9조 (1인1표)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제10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①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스스로 市民投票을 행할 장소(이하 “투표소”라 한다)에 가서 명부 또는 그 초본의 대조를 거쳐 투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투표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제11조 (투표방식) ①투표자격자는 中海淡水化에 찬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中海淡水化에 반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직접 ○의 기호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투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고장 또는 문맹으로 직접 투표용지에 ○의 기호를 기재할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인인 투표자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자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투표의 효력결정) 투표의 효력결정은 다음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표한 자의 의사가 명백하다면 그 투표를 유효로 한다.

제13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의 기호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3. ○의 기호외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
4.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동시에 기재한 것

5.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의 어느 곳에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

6. ○의 기호를 스스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자투표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市民投票의 결과고시 등) 市長은 市民投票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함과 아울러 시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市民投票운동) ①市民投票에 관한 운동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구속되거나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②市民投票에 관한 운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투표일(限定的 淡水化시행에 관련한 투표일을 제외한다)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을 경과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高富町の 골프장計劃의 贊否를 묻는 町民投票條例案

(岐阜縣 高富町 1991.9.4 原案否決)

제1조 (목적) 町民無視인 채로 추진된 골프장계획은 현재 영업중의 골프장이 1개, 그리고 3개가 계획중이다. 4개의 골프장이 차지하는 町 전면적에 대한 비율은 13%, 정산림면적에 대한 비율은 21%이며, 岐阜縣에서도 3번째의 높은 비율이다. 이 점은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의회의 공모의 결과이다. 이 조례는 町民의 생명과 생활을 수호하고 장래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골프장계획에 대한 町民의 의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町民投票의 실시와 조치) ①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계획의 찬부에 대한 町民에 의한 투표(이하 “町民投票”라 한다)를 행한다.

②전항의 町民投票는 신속하게 현지사의 개발허가전에 실시한다.

③町民投票는 町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町長은 町民投票의 결과를 존중하고 신속하게 町民의 의사를 골프장사업자 및 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조 (町民投票의 집행) 町民投票는 町長이 집행한다.

제4조 (町民投票의 기일) 町民投票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町長이 정하여

투표일 30일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투표자격) 町民投票에서 투표의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투표일에 高富町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전조에 규정하는 고시일에 高富町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비밀투표) 町民投票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7조 (1인1표)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8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스스로 町民投票를 행할 장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제9조 (투표의 방식) 투표자격자는 골프장계획에 찬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골프장계획에 반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스스로 ○의 기호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무효투표) 町民投票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의 기호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3. ○의 기호외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
4.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전부 기재한 것
5.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어느 곳에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

제11조 (町民投票결과와 공표) 町長은 町民投票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투표운동) 町民投票에 관한 운동은 町民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로 행하며, 간섭이나 구속을 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제2조제4항 및 제11조의 행위의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3. 自治團體 合併의 찬부에 관한 住民投票條例

자치단체의 합병에 관한 주민투표조례는 인접 자치단체와 합병의 방침의 결정이나 합병협의회의 설치, 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투표를 행하고 단체장에게 그 投票結果의 존중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합병에 반대 내지 의문을 지닌 住民들이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투표조례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행해지기도 한다.



○泉市와 仙台市の 合併에 관한 市民意向投票實施規則

(現宮城縣 仙台市 1987.11.29 制定)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本市와 仙台市の 합병에 관하여 시민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투표(이하 “市民意向投票”라 한다)를 실시하고 나아가 민의의 명확하고 공정한 파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향투표의 실시) ①市長은 本市와 仙台市の 합병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찬부에 대하여 시민의향투표를 행한다.

②시민의향투표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시민의향투표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市長이 정하며 투표일 7일전까지 이를 고시한다.

제3조 (시민의향투표의 결과) 市長은 本市와 仙台市の 합병에 대하여 그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민의향투표에서 유효투표의 찬부중 과반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것을 참고로 판단한다.

제4조 (市長의 책무) ①市長은 시민의향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함과 아울러 그 계발 및 주지의 의무를 가진다.

②市長은 시민의향투표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이 규칙 기타 법령을 준수함과 아울러 시민의향투표의 공정하고 원만한 실시에 협력한다.

제2장 투표구

제6조 (투표구) ①市長은 本市의 구역을 나누어 수개 투표구를 설치한다.

②市長은 전항의 투표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바로 고시한다.

제3장 투표자격자 및 투표자격자 명부

제7조 (투표자격자) ①시민의향투표에서 투표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本市의 의회의원 및 市長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등록을 행하는 날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투표일 전일까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市長은 투표자격자에 대하여 시민의향투표에 관한 투표자격자 명부(이하 “투표자격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 (투표자격자명부) ①투표자격자명부에는 투표자격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

일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자격자명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별로 편제하여야 한다.

제9조 (투표자격자명부의 보정) 市長은 투표자격자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자격자가 투표자격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될 수 없는 자가 등록되어 있음을 안 경우에는 바로 그 자를 투표자격자명부에 등록 또는 투표자격자명부로부터 말소한다.

제10조 (등록이전) 市長은 투표자격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本市의 구역내의 다른 투표구의 구역내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자와 관련한 등록의 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때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부터 투표일까지의 기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투표자격자명부의 보존) 투표자격자명부 및 그 초본은 市長이 보존하며, 그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4장 투 표

### 제1절 투표소에서의 투표 등

제12조 (1인1표) 시민의향투표는 비밀투표로 하며, 1인1표로 한다.

제13조 (투표관리자) ①시민의향투표에 투표관리자를 둔다.

②투표관리자는 本市의 직원중에서 市長이 선임한다.

③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투표관리자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①市長은 투표관리자에 사고가 있거나 투표관리자가 결원된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本市의 직원중에서 사전에 선임한다.

②市長은 투표관리자 및 그 직무를 대리할 자가 동시에 사고가 있거나 그들 자가 동시에 결원된 경우에는 바로 本市의 직원중에서 임시로 투표관리자의 직무를 관장할 자를 선임한다.

제15조 (투표관리자 및 그 직무대리자의 성명등의 고시) 市長은 제13조제2항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관리자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바로 그 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고시한다.

제16조 (투표입회인) ①市長은 각투표구에서 투표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이상 5인이하의 투표입회인을 선임하여 투표일의 전일까지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투표입회인으로 참가하는 자가 투표소를 개소할 시각에도 3인에 달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후 3인에 달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그 투표구에서 투표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3인에 달할 때까지 투표입회인을 선임하여 바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투표에 입회하도록 한다.

③동일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는 하나의 투표구에서 3인이상을 투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투표입회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17조 (투표입회인의 성명등의 통지) 市長은 투표입회인을 선임한 경우 바로 그 자의 주소, 성명 및 그 자가 속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그 투표입회인이 입회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 (투표소의 설치) 투표소는 市長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19조 (투표소의 개폐시간) 투표소는 오전 7시에 개소하여 오후 6시에 폐소한다.

제20조 (투표소의 고시) ①市長은 투표일로부터 적어도 3일전까지 투표소를 고시한다.

②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투표소를 변경한 때에는 투표일을 제외하고 市長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그 뜻을 고시한다.

제21조 (투표소입장권의 교부) 市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자격자에게 투표소입장권을 교부한다.

제22조 (투표자격자명부의 송부) 市長은 투표소를 개소할 시각까지 투표구의 구역에 관계된 투표자격자명부 또는 그 초본을 그 투표구의 각 투표관리자에게 송부한다.

제23조 (투표자격자의 명부의 등재와 투표) ①투표자격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②투표자격자명부에 등재된 자라도 투표일에 本市의 의회의원 및 市長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투표자격자명부에 등재된 자라도 투표자격자명부에 등재될 수 없는 자인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4조 (주소이전자의 투표) 투표자격자는 本市의 구역내에 다른 투표구의 구역내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전이 된 때에는 당해 다른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제25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자격자명부 또는 그 초본의 대조를 거쳐 투표하여야 한다.

제26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양식) ①투표용지는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자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투표관리자는 투표입회인의 면전에서 투표자격자가 투표자격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임을 투표자격자명부 또는 그 초본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의 양식은 별지 양식으로 한다.

제27조 (투표용지의 교환) 투표자격자는 투표용지를 잘못하여 오손한 경우에는 투표관리자에 대해 그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기호식투표의 기재 및 투함) ①투표자격자는 투표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합병에 반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각각 ○의

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투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용지는 투표관리자 및 투표입회인의 면전에서 투표자격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에는 투표자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투표용지의 반환) 투표하기 전에 직접 투표소외에 퇴거하거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투표자격자는 투표용지를 투표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투표자격자의 확인 및 투표거부) ①투표관리자는 투표를 하려는 투표자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본인인 뜻을 선언하게 하여야 한다. 그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투표의 거부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투표관리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을 받은 투표자격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임시로 투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투표는 투표자격자로 하여금 이를 가투표용 봉함에 넣어 표면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투표입회인에게 이의있는 투표자격자에 대하여도 전2항과 같다.

제31조 (투표자격자의 선언) ①투표관리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자격자에게 본인임을 선언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입회인의 면전에서 그 선언을 하게 하여 투표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이를 필기하게 하고, 투표자격자에게 주지한 후 투표자격자에게 이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자격자가 신체의 고장 또는 문맹으로 선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선언서를 작성 이를 본인에게 주지한 후 그 뜻을 선언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언서는 제40조의 투표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퇴거된 자의 투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외로 퇴거받은 자는 최후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게 한다.

제33조 (투표의 비밀유지) 누구든지 투표자격자가 투표한 내용을 진술할 의무는 없다.

제34조 (투표기재장소의 설비) 市長은 투표소에서 투표자격자가 투표의 기재를 하는 장소에 대하여 타인이 그 투표자격자의 투표의 기재를 보거나 투표용지의 교환 기타 부정할 수단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설비를 한다.

제35조 (투표함의 구조) 투표함은 가능한 한 견고한 구조로 하여 그 상부덮개에 각각 다른 2이상의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 (투표함의 봉인확인) 생략

제37조 (투표함의 폐쇄) 생략

제38조 (투표함폐쇄의 조치) 생략

제39조 (투표함의 반출금지) 생략

제40조 (투표록의 작성) 생략

제41조 (투표함 등의 송치) 생략

제42조 (투표의 연기)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투표할 수 없는 때 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市長은 재투표일을 정하여 투표를 한다. 다만 그 투표일은 적어도 5일전에 고시한다.

제43조 (투표연기시 투표일의 통지) 생략

제44조 (투표소에 출입가능한 자) 생략

제45조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소에서 연설토론하거나 소란을 유발하거나 투표에 관하여 항의 또는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이를 제지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투표소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46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의 청구)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경찰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투표서류의 보존) 투표에 관한 서류는 市長이 보존하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2절 대리투표

제48조 (대리투표) ①신체의 고장 또는 문맹으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직접 ○의 기호를 기재할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항과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자에게 신청하여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관리자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당해투표자격자의 투표를 보조할 자 2인을 그 승낙을 얻어 정한 1인에게 투표의 기재할 장소에서 투표용지의 당해투표자격자가 지시하는 란에 ○의 기호를 기재토록 하고, 다른 1인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대리투표의 가투표) 생략

### 제3절 부재자투표

제50조 (부재자투표) 투표자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의 투표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와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투표를 기재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1. 투표자격자가 그 속하는 투표구의 구역외에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중인 때
2. 투표자격자가 부득이한 용무 또는 사고로 인하여 本市의 구역외에 여행중 또는 체재중인 때
3. 투표자격자가 질병, 부상, 임신, 노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거나 산후로 인하여 보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 제51조 (부재자투표관리자) 생략
- 제52조 (부재자투표의 방법) 생략
- 제53조 (부재자투표의 송치) 생략
- 제54조 (부재자투표에 관한 조서) 생략
- 제55조 (투표소폐쇄전에 송치를 받은 부재자투표의 조치) 생략
- 제56조 (부재자투표의 수리여부의 결정 등) 생략
- 제57조 (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의 반환 등) 생략
- 제58조 (투표소폐쇄후에 송피를 받은 부재자투표의 조치) 생략

### 제5장 개 표

- 제59조 (개표관리자) ①시민의향투표에 개표관리자를 둔다.
  - ②개표관리자는 本市의 직원중에서 市長이 선임한다.
  - ③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60조 (개표관리자의 직무대리자 및 직무관장자의 선임) 생략
- 제61조 (개표관리자 및 직무대리자의 성명 등의 고시) 생략
- 제62조 (개표입회인) 생략
- 제63조 (개표입회인의 성명 등의 통지) 생략
- 제64조 (개표소의 설치) 생략
- 제65조 (개표장소 및 시각의 고시) 市長은 사전에 개표장소 및 시각을 고시한다.
- 제66조 (개표일) 개표는 시민의향투표의 당일로 한다.
- 제67조 (개표) 생략
- 제68조 (개표의 점검) 생략
- 제69조 (득표수의 낭독) 생략
- 제70조 (대리투표 및 부재자투표의 수리결정) 생략
- 제71조 (개표의 경우의 투표효력의 결정) 투표의 효력은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표관리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있어서 다음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표한 투표자격자의 의사가 명백하면 그 투표를 유효로 하여야 한다.
- 제72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규의 ○의 기호의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
  - 2.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동시에 기재한 것
  - 3. ○의 기호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 4. ○의 기호를 직접 기재하지 아니한 것
  - 5.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의 어느 곳에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

제73조 (개표의 참관) 투표자격자는 개표의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개표록의 작성 및 송부) 생략

제75조 (투표자격자명부의 반송) 생략

제76조 (개표결과의 고시) 市長은 시민이향투표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함과 동시에 시의회의장에게 통지한다.

1. 투표총수
2. 유효투표의 수
3. 무효투표의 수
4. 찬성득표수
5. 반대득표수

제77조 (점검후의 투표등의 송부) 생략

제78조 (투표, 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존) 생략

제79조 (개표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 생략

제80조 (연기 개표) 제42조본문의 규정은 개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1조 (연기 개표의 통지 등) 생략

제82조 (개표소의 제거) 생략

## 제6장 투표운동

제83조 (투표운동) 시민의향투표에 관한 운동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구속되거나 부당하게 간섭되거나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7장 보 칙

제84조 (투표자격자명부등의 양식) 생략

제85조 (실시세목) 생략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秋川市와 五日市の 合併에 관한 住民投票條例案

(現 東京都あきる野市 1994.11.17 原案否決)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秋川市와 五日市가 합병하려는 경우 그 합병의 가부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라 한다)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투표의 실시) ①이 조례의 시행후 秋川市와 五日市가 합병의 절차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합병에 관한 찬부에 대하여 秋川市에 소속하는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투표일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투표일의 20일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투표자격자) 전조의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秋川市의회의원 및 秋川市長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등록이 행해진 날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투표의 방법) 투표의 방법은 市長이 정하는 투표용지에 합병에 찬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 합병에 반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의 기호를 기재한다. 다만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소정의란에 기재하지 않은 것,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등 무효의 판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제5조 (주민투표결과의 고시) 市長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함과 아울러 시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투표결과의 존중의무) 市長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결과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넘은 합병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시민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운용의 공정) 주민투표에 관한 필요한 사무는 이 조례로 정하는 외에 秋川市 선거집행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市長은 투표자격자에 대해 합병에 관한 자료를 공표하는 등 투표자격자가 그 의사를 적절히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투표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을 경과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4. 기타 住民投票條例

위의 주민투표조례외에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민투표조례로는 橋脚撤去, 대학유치, 病院의 존속확충, 事業融資, 일반폐기물수수료징수, 中學校의 통폐합,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시민참가, 美軍基地의 정리축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條例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계획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청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의회에서 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專修大學誘致에 관한 住民投票條例案

(宮城縣 石卷市 1986.11.21 原案否決)

제1조 (목적) 본조례는 石卷市가 1985년 12월 24일 專修大學과 교환한 각서에 의거하여 동대학유치에 관하여 石卷市民에게 직접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참가의 시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市民投票) 石卷市는 본조례제정후 2월이내에 “石卷市가 전기각서에 의한 3가지 조건(대학용지 15만평의 무상제공, 개학시 경비 3분의 1부담, 개학후 10년간 응분의 보조)을 부담하면서 100억円을 한도로 專修大學을 유치할 것”에 대한 찬부에 대하여 石卷市에 거주하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을 가지는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법으로서 질문할 기회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 (투표자자격) 전조의 선거권의 유무는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4조 (투표결과) 石卷市長은 제2조에 규정하는 투표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투표 총수가 전조의 선거인등록자 총수의 10분의 1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료제공) 石卷市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기준일을 설정함과 동시에 모든 선거인에 대해 專修大學과 교환된 각서·확인증 및 石卷市가 작성한 재정계획을 공표하고, 선거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투표업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한 업무는 石卷市長이 한다.

부 칙

1. 본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조례는 본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종료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하며, 그 효력을 정지한다.

○村的 명칭변경의 贊否를 묻는 村民投票에 관한 條例案

(岐阜縣 明宝村 1992.5.2 原案否決)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村的 명칭변경에 관하여 村民의 의사확인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데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村民의 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비추어 村的 명칭변경에 대한 村民의 의사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村民投票의 실시와 조치) ①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村的 명칭변경에 대하여 찬부를 묻는 村民投票(이하 “村民投票”라 한다)를 행한다.

②村民投票는 본조례성립후 지체없이 행한다.

③村民投票는 村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村長 및 의회는 村民投票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체없이 대처하여야 한다.

제3조 (村民投票의 집행) 村民投票는 村長이 집행한다.

제4조 (村民投票의 기일) 村民投票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村長이 정하여 투표일 20일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투표자격자) 村民投票에 있어서 투표의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투표일에 村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전조에 규정하는 고시일에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村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비밀투표) 村民投票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7조 (1인1표)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제8조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직접 村民投票를 행할 장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제9조 (투표의 방식) ①투표자격자는 촌의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明宝村”란에, 촌의 명칭변경에 반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明方村”란에 각각 ○의 기호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10조 (무효투표) 村民投票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의 기호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3. ○의 기호외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
4.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明宝村”란 및 “明方村”란에 동시에 기재한 것
5.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明宝村”란 또는 “明方村”란의 어느 곳에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제11조 (村民投票의 결과공개) 村長은 村民投票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홍보무선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투표운동) 村民投票에 관한 운동은 村民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로서 행하며, 누구라도 이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제2조제4항 및 제11조의 행위종료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 ○市民參加條例案

(東京都 武藏野市 1994.6.30 原案否決)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武藏野市の 행정에 관하여 시민참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

하고 공평한 절차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등”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武藏野市에 거주, 근무, 재학하는 자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실시기관”이란 市長, 의회, 각행정위원회, 감사위원을 말한다.

제3조 (공유의 원칙)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시민공유의 재산이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등에게 공개 또는 제공된다.

제4조 (실시기관의 의무) 실시기관은 보유하는 정보를 홍보활동·일상근무에 관한 응접 등을 통하여 조기에 정확하게 시민등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가 출자하는 단체등의 정보) 실시기관은 시가 출자 또는 기타 재정지원을 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에 관하여 그 단체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등으로부터 적정한 절차에 의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한 및 범위에서 그 단체에 제출을 요구하여 시민등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의 공개) 실시기관 및 기타 부속기관, 자문기관등 실시기관이 설치하는 회의에서 시의 시책에 관하여 시의 직원이외의 자가 참가하는 회의는 원칙으로 전부 공개하며, 의사록·회의자료등도 공개한다.

제7조 (위원의 공모) ①실시기관은 부속기관, 자문기관등 시의 시책에 참고함을 목적으로 회의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민등 및 실시기관의 공모에 응한 시민등을 위원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위원의 선출은 공정한 선고에 의하도록 하며, 선출시 그 선고의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참가협의회) ①실시기관은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입안에 있어서 희망하는 시민등이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민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시민등의 다수의 합의를 얻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협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자료를 시민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실시기관은 협의회에서 시민등의 요구가 있는 자료는 전부 수집하여, 시민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공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실시기관은 협의회에서 시민등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하며, 그 토의의 의사록은 인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 시민등의 자유로운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시민등의 다수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충분한 협의시간과 횟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의 협의회개최청구) 시민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민등이 직접 시책을 발의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지역적 합의가 도출된 것
2. 실시기관이 행하는 시책입안으로서 실시기관이 협의회회 개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실시기관의 시책의 실시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 (개최청구절차) 시민등이 협의회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시민등의 50인이상의 서명으로 실시기관에 청구하며, 적정한 청구를 수리한 실시기관은 지체없이 협의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활동에 대한 원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책제안을 하려는 시민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기관은 그 자주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구에 응하며,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 및 전문가의 파견등 기술적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 ①市長은 시의 시책안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20세이상의 자의 10분의 1이상의 서명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시책안의 시비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시민이 시책을 제안하여 주민투표를 요구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3조 (투표권자)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20세이상의 자로 한다.

제14조 (투표결과의 공표) ①市長은 투표직후 개표하여 주민투표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투표결과의 공표후 15일이내에 투표결과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日高村 産業廢棄物處理施設設置에 관한 村民投票條例

(高知縣 日高村 1996.4.15 公布, 1997.11.15 廢止)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日高村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村民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고 나아가 촌행정의 원만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村民投票) ①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村民에 의한 투표(이하 “村民投票”라 한다)를 행한다.

②村民投票는 村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村民投票의 실시와 조치) ①村民投票는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제15조의 5에 규정하는 사업공동체가 촌에 대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신청이

있을 때에 실시한다.

②村長은 전항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신청에 대해 회답하는 경우 村民投票에서 유효투표의 찬부중 과반수의 의사를 존중하여 집행한다.

제4조 (村民投票의 집행) 村民投票는 村長이 집행한다.

제5조 (村民投票의 기일) 村民投票의 기일(이하 “투표일”이라 한다)은 村長이 정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투표자격자) 村民投票에 있어서 투표의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투표자격자”라 한다)는 투표일에 촌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전조에 규정하는 고시일(이하 “고시일”이라 한다)에 촌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고시일의 전일에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을 가지는 자로 한다.

제7조 (투표자격자명부) 村長은 투표자격자에 대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村民投票자격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 (비밀투표) 村民投票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9조 (1인1표)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제10조 (투표소에서의 투표) ①투표자격자는 투표일에 직접 村民投票를 행할 장소(이하 “투표소”라 한다)에서 명부 또는 그 초본의 대조를 거쳐 투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투표할 수 있다.

제11조 (투표의 방식) ①투표자격자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때에는 각각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에 ○의 기호를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고장 또는 문맹으로 인하여 스스로 투표용지에 ○의 기호를 기재할 수 없는 투표자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투표할 수 있다.

제12조 (투표효력의 결정) 투표의 효력결정에 있어서는 다음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표한 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투표를 유효로 본다.

제13조 (무효투표) 町民投票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의 기호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3. ○의 기호외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
4.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및 반대란에 동시에 기재한 것
5. ○의 기호를 투표용지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의 어느 곳에 기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제14조 (村民投票의 결과고시 등) 村長은 村民投票의 결과가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함과 아울러 촌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투표운동) 村民投票에 관한 운동은 村民의 자유로운 의사가 구속되거나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村民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